
**2025년도 고양특례시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지원안내서**

2025. 3.



1.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4개사 내외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현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필수 매칭

◆ 참고: 민간매칭 관련 정의 및 예시 ◆

◆ 총 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현금)

- * 지원금: 과제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 민간부담금: 과제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의 총계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1. 지원금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80% 이내
 2.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지원금 예시

구분	총사업비 (A=B+C)	지원금액 (B)	민간부담금
			현금 (C)
금액	62,500천원	50,000천원	12,500천원
비율	100%	80%	20%

2. 신청 자격: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모집공고일 기준

- 스마트모빌리티¹⁾ 혁신 기술²⁾ 보유 기업
 - 1) 스마트모빌리티: 자율주행차, UAM, PM, 드론 등을 비롯하여 첨단 IT기술과 결합된 모든 형태의 이동 수단
 - 2) 혁신 기술: 완성제품, 부품, S/W, 충전소, 인프라, 통신, 플랫폼, 파생서비스, APP, 콘텐츠 등 포괄
- 고양특례시에 소재하거나, 사업 기간 내 이전(본사 이전, 기업부설연구소³⁾ 설립 등) 가능한 타 지역 소재 기업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7. 10.)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최소 2년간 고양시 소재지 유지 필수, 고양시 이전 시기는 협약 사업 기간 내만 인정
-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기업DB 등록⁴⁾ 기업

※ 기업 DB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DB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지원 가능

4) 진흥원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하단 '협력기업 신청하기' → 기업 DB 내용 작성 후 '등록하기' 클릭

3. 지원 내용

- 모빌리티 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및 타업종의 모빌리티 기술 융합 기술 개발 지원
- 제품 개발, 성능시험 및 인증, 모빌리티 기술 사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판로개척 지원

지원 세부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 지원(목업 제작, 금형 제작 등) -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디자인 개발비(제품, 포장 디자인) 등
○ (제품 고도화 지원)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성능 향상 목적 업그레이드 지원 -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디자인 개발비(제품, 포장 디자인) 등
○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의 성능, 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등 - 국내·외 인증 획득비
○ (국내·외 지식재산권 지원)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등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획득비
○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항공료, 체재비 제외), 홍보 마케팅비 등
○ (후속 기업 지원) 2024년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지원기업 및 최근 5년간 진흥원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 포함) 수혜기업에 한 해 제품 실증 비용, 후속 마케팅비 등 지원

※ 외주 용역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 편성 가능

4.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사업 기간 내에 소요되는 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총 2회로 분할 지급
- 협약 이후 관련 서류 확인 후 70%를 선지급하고, 중간평가 이후 잔금 30% 지급
- ※ 협약 시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3개월) 제출

5. 신청 제외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 본 사업에 지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5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혹은 의무사항(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고양산업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 제재대상 기업

- 당해연도 진흥원 타 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 단, 간접지원(네트워킹 등) 및 입주지원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 아래의 사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 기업
5. 최근 결산 기준 완전 자본 잠식 기업

【 조치 방법 】

- 대표자의 경우: 해당과제 지원 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의 경우: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 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평가 및 협약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1. 선정방법

- 1차 평가는(적격 평가) 사업 담당자가 평가
- 2차 평가(발표 평가)는 진흥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을 준용 외부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자격 평가 합격 과제 대상 발표 평가 진행
- 평가 점수는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평가 점수로 정하며,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 을 결정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 우수성’ → ‘기업역량’ → ‘사업계획’ → ‘사업 관리’ 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매칭 비용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2. 평가 기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사업 계획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표, 추진일정, 사업비 등 관리 적절성 - 사업 목표, 추진일정, 추진체계, 산출물의 적정성(10) - 사업비 산정 및 집행계획 적정성(10) 	20
기업 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 기관 역량 - 사업 관리, 보유 노하우, 전문인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기업의 전문성(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차별성 및 성장성 - 국내외 기존 제품·기술과 비교하여 차별 및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유사 중복성(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 -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해당 제품·기술의 계약 가능성 등(10) 	10
사업 우수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 기업 대내외 환경분석에 기반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10) - 매출증가, 고용증대 등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 지속성(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를 도출 시 기대되는 파급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쟁력 증대 여부(10) - 사업 종료 이후 해당 성과물을 통해 동종 또는 이종 업계, 고양시 확산 효과(10) 	20
합 계		100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내 고양시 이전(본사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가능한 타 지역 소재 기업 	5

1. 제재 조치

- 수행포기,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비 부정사용, 사업 평가 결과 등의 개별 사례에 따라 일부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 세부 제재 조치 사항은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관리 지침’ 참고

2. 유의사항

-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선정 기업은 향후 5년간 기업 현황 및 실적(매출액, 신규고용, 인증 등)에 대한 정보(증빙자료 필수)를 제공하여야 함
- 고양산업진흥원의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기업 운영비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며, 회계법인은 진흥원에서 지정하여 공지 예정
- 사업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기업에게 귀속되며 고양산업진흥원은 비상업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정산 서류 제출 시, 각 사업비 사용 내역에 맞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협약 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관련 교육 별도 실시 예정

1. 공고 및 접수일: 2025. 3. 12.(수) ~ 4. 11.(금) 16:00까지

- 제출 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분만 인정
 -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https://www.gipa.or.kr/>) 사업신청-접수중인 사업에서 신청
- 사업 문의: 오세연 주임(TEL: 031-960-7843, E-mail: syooh@gipa.or.kr)

2.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 공고	3. 12.(수) ~ 4. 11.(금)	홈페이지 접수 마감 : 4. 11.(금) 16:00
1차 평가(적격 평가)	4. 14.(월) ~ 4. 18.(금)	사업 담당자 평가 ※ 발표 평가 자료는 4. 18.까지 제출, 제출 이후 변경 불가
2차 평가(발표 평가)	4. 22.(화) ~ 4. 23.(수)	외부 심사위원에 의한 발표 평가
선정기업 최종 발표	4. 25.(금)	홈페이지 공지
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	4. 30.(수)	-

※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 서류는 PDF형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압축, 하단의 파일명으로 제출

· 파일명: 2025년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_신청기업명

ex) 2025년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_고양산업진흥원

구분	순번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 사업계획서
	2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관련 특허, 매출 세금계산서 등)
	3	▪ 최근 3개년 재무제표(비교재무제표) ※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하 기업은 해당연도 재무제표 제출
	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5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 사업 참여 협약서
	8	▪ 수행기관 현금(납입) 부담 협약서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0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11	▪ 기타 신청 자격에 필요한 증빙 서류
	12	▪ 발표 자료 ※ 1차 평가(적격 평가) 후, 발표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4. 18.까지 제출
	13	▪ 2024년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지원기업 및 최근 5년간 진흥원 지원 사업 (※ 컨설팅 지원 사업 포함)에 해당하여 후속지원 신청 시 사업협약서 사본제출
협약서	1	▪ 채무불이행확인서 ※ 채무불이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 지급보증보험증권 ※ 가입 수수료는 사업비 포함 불가

※ 법인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분만 유효

【첨부 1】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계획서

【첨부 2】 사업 참여 협약서

【첨부 3】 수행기관 현금(납입) 부담 협약서

【첨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 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첨부 6】 고양시 이전 협약서

【첨부1】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계획서

2025년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진흥원에서 기입함)		접수일 2025년 월 일
과제명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 표시)	<input type="checkbox"/> 자율주행차 <input type="checkbox"/> UAM <input type="checkbox"/> PM (도심 항공 교통) (개인 이동 수단) <input type="checkbox"/> 드론 <input type="checkbox"/> 기타()		
혁신 기술 분야 (✓ 표시)	<input type="checkbox"/> 완성제품 <input type="checkbox"/> 부품 <input type="checkbox"/> S/W <input type="checkbox"/> 충전소 <input type="checkbox"/> 인프라 <input type="checkbox"/> 통신 <input type="checkbox"/> 플랫폼 <input type="checkbox"/> 파생서비스 <input type="checkbox"/> APP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신청기업	기관(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총괄 책임자	성명(직위)		핸드폰
	전화번호		E-MAIL
총 사업비	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합계
	원	원	원
	%	%	100%
제출서류	1.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계획서 2.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관련 특허, 매출 세금계산서 등) 3. 2022년, 2023년, 2024년 최근 3개년 재무제표(비교재무제표)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사업 참여 협약서 8. 수행기관 현금(납입) 부담 협약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11. 기타 신청 자격에 필요한 증빙 서류 12. 후속 지원 신청 시 사업협약서 사본 제출(※ 해당 시)		
상기와 같이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인)	
고양산업진흥원장 귀하			

1 기업 일반 현황

일반 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설립일		설립 형태	법인() 개인()
	자본금		홈페이지	
사업 현황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말 예상
	직원 수	명	명	명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주력 사업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인증·특허 보유 현황	인증 및 특허명	취득 연도	인증 기관(국가)	추가 설명
대외 수상 실적	수상명	수상 연도	수여 기관	추가 설명
유사 사업 수행 내역 * 2023~2025년 정부, 진흥원 지원사업 포함	연도	사업명(세부 사업명)	지원 기관	지원 금액
				만원

2 요약서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분야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과 제 명																															
사업 기간	2025. 협약일 ~ 2025. 11. 30.																														
사 업 비	총 백만원																														
주관기업																															
필 요 성	○ - . *과제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개략 서술 (예: 시장수요, 기존기술의 한계점, 국산화, 해외수출 등)																														
제품·기술 소개	○ - . *제품·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요약 기술 (제품명, 기능, 구성 간단 소개)																														
과제 목표	<p>* 사업 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 지표 설정(최소 5개 이상, 필수 3 + 자율 2) ※ 단, 사업 기간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이고 타당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과제 평가 시 외부위원 평가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성능 확인 지표 제시 바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표명</th> <th>목표치</th> <th>목표 측정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필수</td> <td>신규 채용</td> <td>-명</td> <td>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td> </tr> <tr> <td>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td> <td>-%</td> <td>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td> </tr> <tr> <td>기업 소재지 고양시 이전</td> <td></td> <td>본사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td> </tr> <tr> <td rowspan="3">자율</td> <td>특허 출원</td> <td>2건</td> <td>특허 출원증</td> </tr> <tr> <td>현장적용 및 상용화</td> <td>1건</td> <td>세금계산서</td> </tr> <tr> <td>프로그램 등록</td> <td>3건</td> <td>프로그램 등록증</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지표명	목표치	목표 측정 방법	필수	신규 채용	-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기업 소재지 고양시 이전		본사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자율	특허 출원	2건	특허 출원증	현장적용 및 상용화	1건	세금계산서	프로그램 등록	3건	프로그램 등록증				
구분	지표명	목표치	목표 측정 방법																												
필수	신규 채용	-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기업 소재지 고양시 이전		본사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자율	특허 출원	2건	특허 출원증																												
	현장적용 및 상용화	1건	세금계산서																												
	프로그램 등록	3건	프로그램 등록증																												
추진 전략	○ - . * 과제 성공을 위한 차별화 전략(제품 개발 관련 전문가 상담, 파트너를 통한 판로개척 등 전략 기술)																														

구분	주요내용
최종 결과물	* 최종 개발되는 제품·서비스 기술
기대효과	* 매출액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시장 확대, 관련기업 육성지원 등 제반 기대효과 제시

※ 모든 항목은 분량에 따라 페이지 조절 가능하나, 항목 삭제는 불가함.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요약서는 2페이지 내외로 작성

I | 과제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등(지원사업 필요성, 추진 계획, 추진 방향 위주 작성)

가.

-
-

나.

-
-

☞ 과제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개략 서술 (예: 시장수요, 기존기술의 한계점, 국산화, 해외수출 등)

2. 과제 목표

가. 과제 목표 요약표

지표명	목표치	목표 측정 방법

나. 세부 내용

-
-

☞ 과제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출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

※ 사업 기간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이고 타당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과제 평가 시 외부위원 평가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3. 추진 체계(사업 수행 기관 역량 위주 작성)

-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수행체계 구성현황 및 각 참여연구원의 역할 구체적 명시
- ☞ 하단의 도식화는 예시이며 기업 현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가.

-
-

나.

-
-

II 세부 내용

1. 제품·기술 개요(기술의 차별성 및 성장성 위주 작성)

가. 제품·기술 소개

-
-

- ☞ 제품·기술의 사진을 포함하고, 제품·기술의 성장성 및 타 제품·기술과의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나. 국내의 현황

-
-

☞ 제품·기술과 관련된 국내의 개발 현황, 상용화 현황, 파급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유사 제품·기술과의 차별성(경쟁력)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 가격	시장 점유율

-
-

☞ 경쟁사 제품의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본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2. 추진 내용(시장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 위주 작성)

가. 개발 내용

-
-

☞ 사업 기간 내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사업 목표와 내용의 선·후행 관계 등 고려하여 작성

나. 시장진입 전략

-
-

☞ 제품·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을 도식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다. 사업화 추진전략 및 확산 전략

-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국내 및 해외 확산 전략을 단계별(연도별 등)로 제시

라. 최종 결과물

-
-

☞ 최종 개발되는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술

3. 기업 대·내외 환경 분석(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위주 작성)

가. 타겟 시장 및 고객 분석

-
-

☞ 타겟 시장 및 대상 고객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기업 성장 지속성

-
-

☞ 매출 증가, 고용 증대 등 사업화를 통한 기업 성장 지속성 기술

다. 상용화 계획

-
-

☞ 수요처를 포함한 제품·기술 상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기대효과(성과물 도출 시 기대되는 파급효과 위주 작성)

가. 결과 활용 및 확산 가능성

-
-

☞ 과제 추진을 통하여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정량적, 정성적 효과로 작성

나. 파급 효과

-
-

☞ 과제 추진을 통하여 기대되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매출액 증대, 산업 발전 등 작성

다. 고양시 확산 효과

-
-

☞ 과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고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시제품 시범설치, 서비스 일부 기증 등)

5. 추진 일정 및 사업관리(추진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관리 위주 작성)

☞ 사업목표와 내용의 선·후행 관계 등 고려하여 주요 추진내용을 기술하고 각 항목별 예상 일정을 표시

추진내용 \ 월	2025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가.

-
-

나.

-
-

III 일반 현황

1. 주관 기업 현황

기업명 (홈페이지)	()		대표자 (이메일)	()
책임자명 (전화/핸드폰)	(/)		책임자 (이메일)	()
설립 일자			상시 근로자 수	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본사				
사업장	①			
	②			
상장여부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input type="checkbox"/> 코스닥 <input type="checkbox"/> 코스피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종				
기업재무자료 (재무제표일치)	2022년(백만원)	2023년(백만원)	2024년(백만원)	
총 자산				
총 자본				
총 부채				
자본금				
영업이익				
상시 종업원 수				
매출 규모	내수			
	수출	직접수출		
		간접수출		
		합계		
	합계			
	3년간 평균 매출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증가율(%)			
	20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주력사업 (제품) 및 핵심기술 보유현황					
사업분야 시장현황					
주요매출처 (2024년)	구분	매출처	품목	매출비 중	거래기간
	내수	00전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50%	30개월
	내수	00전자		30%	
	수출	00전자		20%	
	수출	00전자		20%	
	수출	00전자		20%	
기업소개	-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전문 분야, 수상실적, 특허 및 인증 등) 포함				
회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01.01. (주)000 법인 신규설립 - 2010.01.01. 매출 00000원 달성 - 2010.01.01. 수출 00000원 달성 				

기업 일반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기업명 : 상호전부를 기재(예. (주)○○○○, △△△(주), □기업)
- 설립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을,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재(예.2015.1.1.)
-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 사업장 : 사업장 규모가 큰 순으로 기재(2개 이상 시에는 마지막 주소 말미에 “외 0개” 기재)
- 업종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기재
- 상시종업원수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통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 재무현황 : 제출한 재무제표와 동기화되어야함
 - (1) 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 (2) 수출실적 :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 직수출 실적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발급 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 연구개발비
 - (1) 연구개발투자액 및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
 - ※ 연구개발비 개념
 -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①재무상태표	무형자산의 개발비	당해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②포괄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상동
③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④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예시

기업 일반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즉,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 기타 기업 회계기준서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이외의 금액
- (2)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함
- (3) 연구개발인력은 연구소 또는 전담조직에 속한 인력
- o 인증획득현황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 현황 작성(GS인증, SW사업자신고확인서 등)
 - o 벤처기업인증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유효기간(2년)이내인 기업. 등록인증번호 기입
 - o 주제품 : 창업 후 기술 개발 중인 경우에는 예정 품목을 기재하고, 기존 생산(판매) 제품, 상품(또는 서비스)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을 기재
 - o 연혁 : 법인기업은 법인설립 후의 자본, 대표자 등 변동 상황을 기재하되, 법인등기부등본상 증자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증자분(유, 무상증자)이 있을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

2. 유사 과제 참여 실적

구분	지원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사업 기간 (시작-종료일)	사업비(천원)	주관/ 공동/위탁	사업화 내용 (매출 발생 등)
1						
2						
3						
4						
5						
6						

※ 고양산업진흥원 지원사업 포함

IV 소요 예산

가. 총 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합 계		100%

나. 사업비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합 계	구성비(%)
인건비	신규 제품 개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건비				
소 계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재료비				
	디자인 개발비				
	지식재산권, 인증 획득				
	광고비,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소 계					
합 계					

※ 필요 시 추가 작성

※ 홍보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결과물에 진흥원 지원 제작 문구 삽입

다. 비목별 소요명세(인건비)

(단위 : 천원)

비 목	구분 (신규/기준)	성명	직위	실지금액(A)	참여율 (%, B)	참여기간(C)	합계 (A×B×(C/12)/100)
인건비							
소 계			원				
합 계			원				

※ 인건비는 수행기관의 실지금액 기준으로 산정

라. 비목별 소요명세 (과제 내용에 기반한 비목 설정)

(단위 : 천원)

비 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용도 (사업 연관성)	비고 (예상 구입처, 거래처 등)	
시제품 제작	00시스템 부품	10*6* 8cm	set	50	20,000	1,000,000	시제품 제작에 필요함 부품	00사	
소 계							원		
재료비									
소 계							원		
디자인 개발비									
소 계							원		
지식 재산권 획득, 인증 획득	특허 관련 출원 비용					2,500,000	00시스템 특허출원	00특허법인	
소 계							원		
광고비, 기타 홍보 마케팅	전시회 참가 홍보물제작 30,000원 X 100부					3,500,000	00통신 인증	00기관	
	홍보물 브로슈어 제작 5,000원 X 300부								
							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전시회 참가 홍보물제작 30,000원 X 100부					3,500,000	00통신 인증	00기관	
	홍보물 브로슈어 제작 5,000원 X 300부								
							원		
합 계								원	

비목별 소요명세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만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산정
 - 신규 인력의 경우 100% 인정, 기존 인력의 경우 50% 이내 편성 가능
- 품명을 상세하게 기재
- 장비/시설 구입의 경우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 용도: 개발 일정과 연계하여 작성
- 비고란: 해당 구매처, 거래처명 기재 (미정일 경우 '추후 선정' 으로 기재)
- 시제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 플랜트 제작 경비(정산시 설계도면 실적 제출 필수), 금형비 (연구개발시 필요한 금형 제작비)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주·보조 재료비 등
 - 개발용 SW, 개발전문 TOOL 구입 등
(단, 개인용 컴퓨터, 사무용 OA SW(예: 한글, MS OFFICE) 등 통상적인 기자재는 인정 안함)
- 디자인 개발비
 - 사업 결과물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제품포장 관련 디자인 개발(BI, CI 등) 비용 등
- 국내외 지식재산권 획득비, 국내외 인증 획득비
 - 사업계획서상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인증기관을 통한 제품규격인증 비용 등
- 광고비, 기타 홍보 마케팅비
 - 홍보물제작(브로슈어 등), 신문, 잡지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 부스 임차료, 설치비용, 참가비 등에 한하여 계상(항공료, 체재비 등 제외)

V 참여 연구원 현황

순번	구분 (신규/기존)	성명	직위	생년월일	참여 기간	담당 분야	참여율(%)
1							
2							
3							
4							
5							
6							
7							
8							
9							
10							

※ 필요 시 추가 작성

【첨부 3】수행기관 현금(납입) 부담 약속서

[수행기관 현금(납입) 부담 약속서]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25년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과제명			
주관 기업		총괄 책임자	
사업 기간	협약일 ~ 2025. 11. 30.		
총 사업비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기업명	민간 부담금(현금)	입금 예정일
○○○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 (인)

고양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양산업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재무정보 등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학력, 경력 등 참여연구원: 성명, 직위, 생년월일 등	사업 선정 평가, 사업 수행 관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 이용기간
고양시, 고양시의회 등 상급기관	사업 감사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한 상급기관의 요구 자료 대응	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재무정보 등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학력, 경력 등 참여연구원: 성명, 직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첨부 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사업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신청자격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2.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에 표시)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나요? ✓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 휴폐업 중인 기업인가요?		
4. 유사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에 표시) ✓ 2025년 현재 신청인은 신청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나요?		
5. 정부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에 표시)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가요?		
6. 진흥원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에 표시)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산업진흥원 사업 참여 제재대상 기업인가요?		
7. 가점 대상 여부 ✓ 현재 신청기업은 사업기간 내 고양시 이전(본사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가능한 타 지역 소재 기업인가요?		
8. 기업 DB 등록 여부 ✓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기업 DB 등록하셨나요?		
9. 후속지원 신청 여부 ✓ 2024년 스마트모빌리티 혁신기업 유치 지원기업 및 최근 5년간 진흥원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 포함)에 해당 되시나요?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과제책임자) : (서명)

주관기업 대표 : (인)

